

전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단19317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전북신용보증재단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5. 11. 26.

##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1,432원 및 그 중 6,981,402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7.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C와 피고 A 사이에 2014.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C는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1035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4.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C는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1035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1,432원 및 그 중 6,981,402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비율을,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위수현**

별지